



제 926 호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0- 8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1
- 공고 제2010- 86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재입안(안) 열람공고 3
- 공고 제2010- 8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
- 공고 제2010- 878호 방법용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목적 추가 행정예고 22
- 공고 제2010- 88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재입안(안) 정정공고 24
- 공고 제2010- 8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03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25
- 공고 제2010- 88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35
- 공고 제2010- 886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 공시 37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0-8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2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입안사유

- 현지 여건과의 불일치한 환지계획과 주민의 요구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 로 : 기정 38개 노선(43,334.9㎡) → 변경 38개 노선(43,357.0㎡)

나. 공 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도림 6 소공원	소공원	도림동 669-19	194.6	감 78.6	116.0	인고 제2009-1047호	

다. 주차장, 녹지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건축물에 대한 용도·배치·형태·색채·대지내공지·차량및주차·보행동선·단지내시설물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82)
-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86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재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재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 도시개발과(☎ 453-29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2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20,053	-	220,053	100.0	
소계	50,663	90,532	141,195	64.2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50,66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7,292	21.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592	24.4	
	준주거지역	-	40,311	18.3	
	일반상업지역	56,746	16,718	73,464	33.4
준공업지역	107,003	감)107,003	-	-	
자연녹지지역	5,641	감)247	5,394	2.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 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7,292	250	◆ 성화빌라 일원의 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일반상업지역	3,371	500	◆ 인근 개발계획(논현택지)과 연계한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지역 249	제3종일반 주거지역	53,592	250	◆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40,311	500	◆ 대양빌라 일원의 체계적 개발유도 및 용도지역 현실화
			일반상업지역	12,399	500~ 1000	◆ 소매어시장 일원의 체계적 개발유도 및 용도지역 현실화
			자연녹지지역	701	80	◆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948	500	◆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	일반 미관지구	대로 3-76	19,532	1,340	15		
변경	-	-	일반 미관지구	대로 3-76	9,600	685	15		
기정	-	-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 3-76	4,600	370	15		
변경	-	-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 3-76	7,870	545	15		
기정	-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일원	155,180	-	-		
변경	-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일원	171,898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일반미관지구	면적감소 감) 9,932㎡	◆ 논현동 66-18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공동주택 (아파트)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일반미관지구 일부 폐지
-	중심지미관지구	면적증가 증) 3,270	◆ 논현동111-164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신규지정
-	방화지구	면적증가 증) 16,718	◆ 논현동111-151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반상업 지역 경계에 맞추어 방화지구 경계 조정

2.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소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 일원	-	220,053	220,053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변 경 사 유
신설	①	소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 일원	220,0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에 의거, 소래포구, 배후지역의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안)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기정	17	6,244	118,371	6	3,009	54,760	9	1,925	27,261	2	1,310	36,350
	변경	22	7,007	122,795	5	3,059	58,541	13	2,283	31,014	4	1,665	33,240
광로	기정	1	240	9,600	-	-	-	-	-	-	1	240	9,600
	변경	-	-	-	-	-	-	-	-	-	-	-	-
대로	기정	2	1,416	37,130	-	-	-	1	346	10,380	1	1,070	26,750
	변경	2	1,416	37,130	-	-	-	1	346	10,380	1	1,070	26,750
중로	기정	5	3,074	58,445	2	2,467	49,340	3	607	9,105	-	-	-
	변경	7	3,994	72,555	2	2,763	55,581	4	734	11,010	1	497	5,964
소로	기정	9	1,514	13,196	4	542	5,420	5	972	7,776	-	-	-
	변경	13	1,597	13,110	3	296	2,960	8	1,203	9,624	2	98	526

※ 지구 외 구간 포함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보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34	40~50	보조간선도로	240	중1-302	대1-20	일반	70.12.17	건고586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간선도로	2,287	지구계 남동측	광로3-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02	20	보조간선도로	2,583 (296)	소래논현지구 지구계남동측	대1-20	일반 도로		
기정	대로	2	74	30	보조간선도로	346	논현동 111-407 (논현2지구계)	논현동 66-3 (대1-20)	일반 도로	07.03.12	인고53
기정	대로	3	76	25	집산도로	1,070 (583)	대3-23	중1-9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90	20	국지도로	180	광3-34	대3-76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변경	중로	1	90	20	국지도로	180	중1-302	대3-7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8	15	국지도로	127	논현동 소1-6	대3-76	일반 도로	79.12.14	경고518
변경	중로	2	58	15~18	국지도로	127	논현동 소1-6	대3-7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도로	390 (128)	대3-76	논현동 21-2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기정	중로	2	110	15	국지도로	90	대3-76	논현동 28호광장	일반 도로	79.12.14	인고1588
변경	중로	2	110	15~18	국지도로	110	대3-76	중(소래) 3-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소래1	18	국지도로	107	대3-76	대1-2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0	대3-76	소1-4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324	소2-1	논현동 광장28호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34	28호광장	중2-58 기점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64	중2-58 기점	광3-34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232	소2-1	대2-7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소래2	12	국지도로	497	대2-74	중1-302	일반 도로		
폐지	소로	1	8	10	특수도로	34	소3-2	광3-34	보행자 전용도로	02.03.19	남동고 18호
신설	소로	1	소래3	10	국지도로	14	중1-302	논현동 111-25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0	대로3-76	109-8호 (소래초교)	일반 도로	94.11.29	인고20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34	대3-76	광3-17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40	중1-90	소2-8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 도로	89.11.08	인고1588
신설	소로	2	소래4	8	국지도로	112	소1-3	소1-4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소래5	8	국지도로	100	중2-58	소2-9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소래6	8	국지도로	79	소2-9	소(소래) 2-7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소래7	8	국지도로	204	소2-9	소(소래) 3-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소래8	4	특수도로	31	중1-302	소(소래) 2-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소래9	6	특수도로	67	논현동 111-168	중1-302	보행자 전용도로		

※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34 중로1-302	중로1-302	폭원축소 (B=40m→20m)	◆ 제3경인고속국도 개설 등으로 인하여 광로 3-34호선의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구간이 40m에서 20m로 기 변경(중로1-302호) 되어 있음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연결 도로인 중로1-302호선과 연계하여 광로3-34호선의 폭원을 20m로 축소
대로2-74	대로2-74	변경없음	-
대로3-76	대로3-76	변경없음	-
중로1-90	중로1-90	기점변경 (광3-34→중1-302)	◆ 광로3-34호선의 노선명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중로2-58	중로2-58	가감속차로 확보 (B=15m→15~18m)	◆ 주상복합 건축에 따른 가감속차로 3m 확보
중로2-109	중로2-109	변경없음	-
중로2-110	중로2-110	연장변경 (B=15m, L=90→110m) 가감속차로 확보 (B=15m→15~18m)	◆ 교통광장 28호 폐지에 따른 연장증가 ◆ 주상복합 건축에 따른 가감속차로 3m 확보
-	중로(소래)2-1	신설 (B=18m, L=107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1-3	소로1-3	변경없음	변경없음
소로1-4 소로1-6 소로2-8	소로1-4 중로(소래)3-2	연장축소(소로1-4호선) 노선합병 및 노폭확장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신설(대로2-74호)로 연장 축소 ◆ 논현(2)택지 인접 광장(4,5,6호) 경계를 기준으로 노폭 12m 확보
소로1-8	-	폐지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폐지
-	소로(소래)2-3	신설 (B=10m, L=14m)	◆ 소래수협공판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소로2-1	소로2-1	변경없음	-
소로2-3	소로2-3	변경없음	-
소로2-9	소로2-9	변경없음	-
소로1-10	소로1-10	변경없음	-
-	소로(소래)2-4	신설 (B=8m, L=112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소래)2-5	신설 (B=8m, L=100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소래)2-6	신설 (B=8m, L=79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소래)2-7	신설 (B=8m, L=204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소래)3-8	신설 (B=4m, L=31m)	◆ 소래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자 도로 신설
-	소로(소래)3-9	신설 (B=6m, L=67m)	◆ 소래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자 도로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9,894	9,894		
신설	①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111-36일원	-	640	640	-	
신설	②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5,633	5,633	-	
신설	③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3,621	3,621	-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위치 : 논현동 111-36일원 ·면적 : 640㎡	◆ 논현(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과 연계한 주차장 결정
②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위치 : 논현동 66-18일원 ·면적 : 5,633㎡	◆ 소래어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 소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③	주차장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신설 ·위치 : 논현동 66-18일원 ·면적 : 3,621㎡	◆ 소래어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 소공원① 지하에 중복결정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공원)

주)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공간시설

■ 광 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00	감)3,134	866		
폐지	㉘	-	교통 광장	남동구 논현동 (소래역)	4,000	감)4,000	-	75.05.16	건고75-75
신설	①	-	일반 광장	남동구 논현동 111-329 일원	-	866	866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㉘	-	◆ 폐지	◆ 신수인선 노선 변경에 따른 소래역사 이전으로 교통광장 폐지
①	-	◆ 일반광장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11-329 일원 ◆ 면적 : 866㎡	◆ 소래어시장 진입부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일반광장 신설

■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8,473	8,473		
신설	①	-	소공원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4,209	4,209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①	-	역사공원	남동구 논현동 111-13일원	-	4,264	4,264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 소공원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면적 : 4,209m²	◆ 지역주민 및 소래포구 방문객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 ◆ 주차장③ 중복결정(A=3,621m²) (지상1층 공원, 지하1층 주차장)
①	-	◆ 역사공원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11-13일원 ◆ 면적 : 4,264m²	◆ 장도포대지(인천광역시문화재자료 제19호) 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역사공원 결정

■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117	6,117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1,572	1,572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1,856	1,856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2,689	2,689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면적 : 1,572m²	◆ 대로3-76호선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신설
②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면적 : 1,856m²	◆ 대로2-74호선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신설
③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면적 : 2,689m²	◆ 대로1-20호선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신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048	1,048		
신설	①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75일원	-	358	358	-	일반상업지역
신설	②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	72	72	-	일반상업지역
신설	③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	162	162	-	일반상업지역
신설	④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87일원	-	274	274	-	일반상업지역
신설	⑤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429일원	-	182	182	-	일반상업지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11-275일원 ◆ 면적 : 358m ²	◆ 장도포대길(중(소래)3-2호선) 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②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 면적 : 72m ²	◆ 장도포대길(중(소래)3-2호선) 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③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 면적 : 162m ²	◆ 장도포대길(중(소래)3-2호선) 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④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11-87일원 ◆ 면적 : 274m ²	◆ 장도포대길(중(소래)3-2호선) 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⑤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11-429일원 ◆ 면적 : 182m ²	◆ 중로1-302호선 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700	700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 하수도(오수펌프장) 신설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66-18일원 ◆ 면적 : 700m ²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오수 를 만수하수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하기 위하여 펌프장 신설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A)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도면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1	주 1BL~6BL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A2	공동 1BL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A3	준 1BL~2BL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창고시설 중 창고 ·주거복합건축물
A4	준 3BL~5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창고시설 중 창고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A5	상 1BL, 상 4BL~7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A6	상 2BL~3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주거복합건축물

- 주) 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권장용도(B)

◆ 권장용도 지정을 통하여 구역특성 반영 적극 유도

도면번호	위 치	권장용도(B)
B1	주 1BL	◆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B2	주 2BL~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 불허용도(C)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설정

도면번호	위 치	불허용도(C)
C1	전 체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

■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고
건폐율(%)	60%이하	50%이하	60%이하	80%이하	

주) 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80% 적용
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 용적률

◆ 용적률 계획(안)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 고
주 1BL~6BL	200%	230%	250%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공동 1BL	180%	200%	250%	준공업 → 제3종일반주거
준 1BL~5BL	300%	400%	500%	준공업 → 준주거
상 1BL~7BL	350%	420%	500%	제1종일반주거·준공업 → 일반상업
상 2BL~6BL	700%	800%	1000%	일반상업

주)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인센티브 계획(안)

구 분	완화 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 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건축물의 형태	지붕형태(규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옥상 조경시설 설치시 (경사지붕 제외)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대지면적×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권장)	기준용적률×0.03	위치 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규제)	기준용적률×0.03	

- 주) 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

위 치	건축물 용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주 1BL~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제2종일반주거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제2종일반주거
공동 1BL	공동주택(아파트)	5	-	제3종일반주거
준 1BL~2BL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5	14	준주거
준 1BL~5BL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외 기타용도	-	10	준주거
상 1BL	근린상업시설	3	6	제1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상 2BL~6BL	주상복합, 업무시설	5	-	일반상업
	주상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일반상업
상 7BL	판매시설 및 시장 배후상가	-	5	준공업 → 일반상업

- 주) 1.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포함되는 획지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최저 2층 이상
 2.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라) 건축물의 배치

■ 건축선

구 분	적 용 지 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 한 계 선	대로1-20호선 변	1m	◦전면공지로 조성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2-74호선 변	2~3m	
	대로3-76호선 변	2m	
	중로1-90호선	2m	
	중로1-302호선 변	1~5m	
	중로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3-2호선 변	2m	
	소로(소래)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2-9, 2-10호선 변	2m	

- 주) 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2.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마)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열람장소에 배치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교통처리계획, 옥외광고물계획) : 열람장소에 비치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	계 획 내 용	
소래1 특 별 계 획 구 역	상7BL	8,428	목 적	◆ 소래어시장과 인접 배후지역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 정비계획 수립 시 어시장 상인 및 배후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
			용 지 도 역	◆ 준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 도	◆ 판매 및 영업시설
			밀 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 층 수 : 5층이하
			배 치 및 형 태	◆ 건축한계선 : 20m도로(중로1-302호) 전면부 5m지정
			대 지 내 공 지	◆ 전면공지 : 중로1-302호선 변 폭 5m지정 ◆ 쌈지형 공지 : 논현동 111-253 일원
			기 타	◆ 공동개발 권장

주)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토지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453-2982)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8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과오납금 반환 결정에 대한 직무 위임 범위를 설정하여 지방세 비리 사고를 예방함
- 경리관의 직무 위임 규정 중 직무 위임 중 계약 체결 기준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임 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직무 위임 범위 규정 삽입(안 제4조제1항)
- 분임 경리관의 직무 위임 규정 중 “추정 가격” 을 “추정 금액” 으로 개정(안 제2조제5항)
-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에 관한 규정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을 “『전자정부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37조의 1)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453-2261)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래로 633 남동구청, ☎453-2261, FAX 453-226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외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년 6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과오납금 반환 결정에 대한 직무 위임 범위를 설정하여 지방세 비리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 경리관의 직무 위임 규정 중 직무 위임중 계약 체결 기준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분임 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직무 위임 범위 규정 삽입 (안 제4조제1항)
- 분임 경리관의 직무 위임 규정 중 “추정 가격” 을 “추정 금액” 으로 개정(안 제2조제5항)
-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에 관한 규정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을 “『전자정부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37조의 1)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행정안전부예규 제307호)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중 “추정 가격”을 “추정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1 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과오납금의 반환</u>	<u>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 ----- ----- ----- -----
1. <u>추정가격</u>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1. <u>추정금액</u> ----- ----- ----- -----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 「전자정부법」 -- <u>같은법</u> 시행령 ----- ----- ----- ② ----- ----- ----- ----- 「전자정부법」 -- <u>같은법</u> 시행령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878호

방범용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목적 추가 행정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목적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또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1. 주요내용**

- 가. 추가목적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 나. 수 량 : 13대
- 다. 위 치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13개소(붙임참조)
- 라. 단속시간 : 연중 24시간
- 마.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남동구 교통행정과(☎ 453-2880)

2.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53-2880, FAX 453-2889)

- 예고주요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법용 CCTV 13개소 위치

연번	설 치 위 치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609-1 미추홀도서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04 복자유치원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06 예지유치원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397 성광유치원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1114 기암유치원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436 리라유치원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377-1 성산어린이집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864-20 참아동어린이집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94 해와달유치원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00 영보,혜원유치원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2-5 미추홀학교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222-4 푸른마을 유치원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209-5 선미유치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88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재입안(안) 정정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0-866(2010.6.23)호로 공고된 인천도시관리계획 【소래구역 :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재입안(안)에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10. 6. 2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정정공고내용

◆ 준 6BL 건축물의 용도(허용용도,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기재사항 누락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A)

도면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7	준 6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중 상점

■ 용적률

◆ 용적률 계획(안)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 고
준 6BL	300%	350%	400%	준공업 → 준주거

다) 건축물의 높이

위 치	건축물 용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준 6BL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5	준주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8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0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중로1-303호선)공사】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032-446-49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설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시행지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1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1) 종 류 : 도로 (중로1-303호선)
 - (2) 명 칭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중1-303호선)공사
3. 사업의 규모 (변경 없음)
 - 중로 1-303호선 B=20m, L=1,770m 중 32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1) 성 명 :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 (2) 주 소 : (주)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09. 2. 27 ~ 2010.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변경 있음)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변경 없음)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종로1-303호선)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 고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계	43	8,789	5	82	2	1,527	36	7,180	
변경	계	38	6,612	4	80	2	1,527	32	5,005	
기정	전	12	536	－	－	－	－	12	536	
기정	답	2	76	－	－	－	－	2	76	
기정	대	6	146	－	－	－	－	6	146	
기정	임	12	4,410	－	－	－	－	12	4,410	
변경	임	9	2,536	－	－	－	－	9	2,536	

기정	도	7	1,609	5	82	2	1,527	-	-	
변경	도	6	1,607	4	80	2	1,527	-	-	
기정	잡	4	2,012	-	-	-	-	4	2,012	
변경	잡	3	1,711	-	-	-	-	3	1,711	

■ 용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계		관리관계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주소(소유자)	관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계		43필지			58,382	8,789						
변경	계		38필지			6,612	6,612						
기정	1	고잔동	457	5	전	15	15	오재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변경	1	고잔동	457	5	전	15	1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2	고잔동	457	6	전	14	14	오재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변경	2	고잔동	457	6	전	14	1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3	고잔동	457	7	전	8	8	오재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변경	3	고잔동	457	7	전	8	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4	고잔동	457	8	전	7	7	오재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변경	4	고잔동	457	8	전	7	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5	고잔동	457	9	전	23	23	오재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변경	5	고잔동	457	9	전	23	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6	고잔동	460	23	전	1	1	오정진	인천 남동구 고잔동 341-3				
변경	6	고잔동	460	23	전	1	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7	고잔동	460	24	전	47	4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8	고잔동	489	5	대	47	47	조수영	인천시 남구 고잔동 322	국 (창원세무서)		압류	
변경	8	고잔동	489	5	대	47	4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9	고잔동	489	10	대	2	2	주식회사 에스엠아로마	인천 남동구 고잔동 489-4	국 (서대전세무서)		압류	
변경	9	고잔동	489	10	대	2	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0	고잔동	490	5	전	1	1	정정배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7 쌍용0파트 6동 52호				
변경	10	고잔동	490	5	전	1	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1	고잔동	490	6	대	60	60	신승구 박예선	인천시 남구 학익동 48-2 신동아0파트 25동 403호 인천시 남구 학익동 79 동아0파트 117동 60호				
변경	11	고잔동	490	6	대	60	6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2	고잔동	490	10	대	9	9	박명규	인천 남구 주안동 1457-11	남동농업협동조합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1(2석북지점)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1(2석북지점)		
변경	12	고잔동	490	10	대	9	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3	고잔동	490	12	전	1	1	정정배	인천 남구 관교동 13-6 삼환0파트 103동 505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송림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13	고잔동	490	12	전	1	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4	고잔동	491	2	전	128	12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15	고잔동	491	4	전	269	269	주식회사한화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변경	15	고잔동	491	4	전	269	26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6	고잔동	491	5	전	22	22	주식회사한화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변경	16	고잔동	491	5	전	22	2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7	고잔동	500	3	잡	1,039	1,039	주식회사한화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변경	17	고잔동	500	3	잡	1,039	1,03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18	고잔동	500	8	잡	429	4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19	고잔동	500	9	잡	243	24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20	고잔동	519	23	임	1,348	1,348	유진기업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52-6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9-1(청역기업금융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9-1(청역기업금융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9-1(청역기업금융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무교기업센터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변경	20	고잔동	519	23	임	1,348	1,34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21	고잔동	519	25	도	773	773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정	22	고잔동	519	27	임	253	253	주식회사한화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변경	22	고잔동	519	27	임	253	2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23	고잔동	519	35	임	203	20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24	고잔동	519	36	임	159	15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25	고잔동	519	37	임	451	45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26	고잔동	523	6	도	754	7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정	27	고잔동	523	7	답	17	17	해주오씨 인천시 고잔동 종친회	인천 남동구 고잔동 470-2				
변경	27	고잔동	523	7	답	17	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28	고잔동	523	11	임	7	7	해주오씨 인천시 고잔동 종친회	인천 남동구 고잔동 470-2				
변경	28	고잔동	523	11	임	7	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29	고잔동	523	12	임	111	111	해주오씨 인천시 고잔동 종친회	인천 남동구 고잔동 470-2				
변경	29	고잔동	523	12	임	111	11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30	고잔동	523	13	답	59	59	한국토지 개발공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변경	30	고잔동	523	13	답	59	5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31	고잔동	523	14	대	1	1	해주오씨 인천시 고잔동 종친회	인천 남동구 고잔동 470-2				
변경	31	고잔동	523	14	대	1	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32	고잔동	523	15	임	1	1	해주오씨 인천시 고잔동 종친회	인천 남동구 고잔동 470-2				
변경	32	고잔동	523	15	임	1	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기정	33	고잔동	586	16	도	53	53	국(국토해양부)					
기정	34	고잔동	586	42	도	16	16	국(국토해양부)					
기정	35	고잔동	586	43	도	4	4	국(국토해양부)					
기정	36	고잔동	586	44	도	7	7	국(국토해양부)					
기정	37	고잔동	586	45	대	27	2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기정	38	고잔동	산16	4	임	3	3	한국토지 개발공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변경	38	고잔동	산16	4	임	3	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제척	39	고잔동	500	4	잡	35,382	30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제척	40	고잔동	519	4	임	15,345	1,08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제척	41	고잔동	519	24	임	929	78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제척	42	고잔동	519	38	임	11	11	주식회사한화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제척	43	고잔동	586	17	도	103	2	국(국토해양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88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5), 한국산업단지공단(☎032-810-93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주차장설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6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주차장
- (2) 명 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주차장 3,31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 사항 : 「별첨」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886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중 이의신청가격 및 직권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직권정정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I.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0.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74외 9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내 역 : 별첨(종이문서)

II. 개별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행정소송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지방관할법원에 제출

III. 개별주택가격 직권정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정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주택소재지 구청(세무1과)에 제출

201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공시 내역

이의신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위 : 원)

일련번호	소재지	당초가격	결정가격	비고
1	구월동 70-74	146,000,000	154,000,000	
2	구월동 70-78	114,000,000	124,000,000	
3	구월동 1243-27	120,000,000	121,000,000	
4	간석동 268-8	353,000,000	363,000,000	

직권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위 : 원)

일련번호	소재지	당초가격	결정가격	비고
1	구월동 1342	179,000,000	144,000,000	지하1층 117.05㎡ 부속건물→비주거용
2	간석동 283-15	81,200,000	53,700,000	3층 91.86㎡ 비주거용 건물 누락
3	간석동 616-10	119,000,000	256,000,000	2층 196㎡ 비주거용→주거용
4	수산동 200	134,000,000	84,200,000	토지용도 구분 주상용지대→농경지대
5	도림동 13블럭 1롯트	319,000,000	318,000,000	환지예정 면적변경 215.8㎡→214.2㎡
6	고잔동 335-1 1동,2동	387,000,000	256,000,000	1층 31.73㎡ 비주거용 누락